

I

자조금 도입 배경 및 경과

-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 스스로 품목 경쟁력 제고,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도록 자조금 제도 도입('92~)
 - '90년대 들어 국내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자 주도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추진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92.4월)을 통해 임의자조금 제도 도입(제13조), '93년 신농정 5개년계획에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농협중앙회 주도 품목별전국협의회 결성('98 : 20개)
 -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內 자조금관련 조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00.6월)
 - 개별법 제정('02년 축산, '13년 농산 등)을 통하여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현재 축산·농산·식품 자조금 총 42개(의무 28, 임의 14) 운영 중
 - * 농산 29개(의무 18, 임의 11), 축산 11(의무 9, 임의 2), 식품 2(임의 2)

- ①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의무자조금 도입('02.5월)
 - 이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출금의 성격을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으로 구분('06.12월)
- ②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산분야에도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13.3월) : 수산, 임산물 포괄
 -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에 생산·유통 자율조절 권한 부여(관련 법 제21조2조 신설, '18.5월)
 - ▶ 수산물 : 10개품목(의무김·전복·광어·송어·향어·메기·관상어·민물장어, 임의굴·미역)
 - ▶ 임산물 : 3개품목(의무뽕은감·자생란, 임의밤)
 - ↳ 농식품부에서 운영 중, 법 개정을 통해 산림청으로 이관 예정
- ③ 식품산업 분야에도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일부 품목(김치, 전통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형태*의 자조금 제도 도입('19년)
 - * 「김치산업진흥법」 및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9.12월)을 통해 개별법 內 단일조항으로 규정, 품목단체가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II

농산자조금 운영 현황

- 수급불안에 대한 생산자 개별 대응의 한계 극복, 시장개방 대응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00년 임의자조금, '13년 의무자조금 도입
 - 해당품목 재배면적의 50% 이상의 농가, 전체 농산업자 중의 50%의 동의를 얻어 단체(사단법인) 설립 후, 해당 단체가 의무자조금설치계획서의 장관 승인을 거쳐 전체 농산업자가 의무 납부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 * ①농업인 ②농업경영체 ③생산자단체 ④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자: 감귤인삼참다래파프리카는 유통업체가공업체 등
 - 정부는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수급조절,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시 해당연도 사용액 매칭(100~70%) 지원
 - * 국고지원 : ('00) 20억원 → ('10) 84.6 → ('20) 91.3 → ('21) 105.8 → ('22) 124 → ('24) 131
 - '24년 6월 현재 28개 품목 자조금 운영 중(의무 18, 임의 11)
 - * (의무 18) 인삼('15년) → 친환경('16) → 백합·키위·배·파프리카·사과·감귤·콩나물·참외·절화·포도('17~'19) → 양파·마늘('20) → 뽕은감·복숭아('21) → 차·자생란('22)
 - * (임의 11) 단감, 무·배추, 고추, 딸기, 밀, 가지,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밤, 버섯
- 농산자조금 대부분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활용되고, 수급조절 및 품질 향상 등의 노력 병행, 규모가 작을수록 운영비 비중이 높음
 - * '23년 사업기준 : 소비홍보(27.9%), 수급안정(27.2%), 유통구조개선(1.9%), 경쟁력 제고(7.1%), 수출활성화(2.3%), 교육 및 정보제공(14.0%), 조사연구(2.5%), 운영비 등 기타(17.1%)
 - 친환경 43억, 사과 36억, 감귤 35억으로 가장 크고, 20~30억원(3개품목), 10~18억원(6개품목), 10억원미만(2개품목)
- 자조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지원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무국 직원 교육 및 민원대응 지원 등 단체 역량 육성, 거출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추진
 - 단체별 탄력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상한 비율 조정(시행규칙 개정, '23.12)

그동안의 주요 성과

□ 「농수산물자조금법」 제정(13년)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기반 마련

- 임의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토록 **임의자조금 졸업제** 시행(18년)
 - * 임의자조금단체 중 의무자조금을 추진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3년 이내에 의무자조금 결성을 전제로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한시적 지원, '23년 지원 : 블루베리, 밤
- 생산자 스스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에 **생산·유통 자율조절 권한 부여**(관련 법 조항 신설, '18.5월 시행)
 - * 법 제 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작 및 출하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가능

□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20.11월)

- 의무거출금 미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부과·징수 권한 위임**, 정부지원 **보조사업*** 지원 제한 등
 - * 유통·수출 분야(30개 내역사업) : 과수생산유통지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등
- 생산·유통 자율조절 규정에 따라 **의무자조금 생산자 조직화 단체별** 여건에 맞게 **경작 및 출하신고 도입 운영**(양파·마늘, '21.2월~)

□ 단체별 사업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자조금이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도록 **유인 체계 마련**
 - 매년 **평가 실시** 및 평가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14~),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적용**(21~) 등 **관리체계 지속 강화**
 - **단체별 여건 및 품목 유형**을 고려한 **육성 방향***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 연계 평가체계**** 도입·정비를 통한 **성과관리** 추진('23~)
 - * 수급관리·내수활성화·수출확대 등 4개로 분과하여 전문가협의체 운영('22.7~12월)
 - ** 현재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자조금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구분·차등 지표 적용
 - 참외·파프리카는 **저급품 수매, 시장격리** 등 **자율적·선제적 수급조절** 실시, 마늘·양파는 **경작출하신고 의무화로 사전적 수급 체계 마련** 중

- ① **(참외)** 재배면적이 아닌 필수 부자재인 포장박스(20원)를 거출목으로 설정하고, 미납자 방지를 위해 농협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실적 연 2회(7월/10월) 확인 부과
→ **저급품 참외를 수매 후 액비·퇴비화로** 상품성 제고 및 가격안정 도모(연간 1만톤)
- ② **(파프리카)** 재배면적 기준 평당 1,000원 연2회 부과, 미납자는 수출 ID 삭제 조치
→ 동·하계 작형 **출하 중복**에 따른 가격하락 시 **자조회** 주도로 일정 물량을 **시장격리** 등 가격안정

1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

- 私法人(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公法人(거출금 부과, 품목 대표성 부과, 생산유통자율조절)처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인 자조금단체가 의무거출금 부과 등 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논란 발생

2 농수산업자(회원)의 범위

- 대다수 품목은 생산자중심(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으로 회원을 정의, 일부 품목*만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4개품목(인삼·파프리카·참다래·감귤), ** 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수입업자 등
- 법 제2조 3항에서 자조금단체를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함에 따라, 농수산업자(회원)의 범위 명확화 필요

3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와 독립성

- 기존의 협회와 자조금단체(법인격)간 상호 영향력 및 위상 정립 등 쟁점 존재
- 자조금단체의 운영관리의 책임은 이사회가 담당해야 하나, 자조금단체의 실질적 업무를 법인격이 없는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행

4 자조금제도 발전 방향에 맞게 법률 체계 등 개선

- 자조금 조성 중심에서 조성된 자조금단체가 건실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품목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 강화
* 신규 조성 품목은 시범 운영(임의단체)를 거친 후 성장 단계에 맞춰 의무 전환 필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필요
- 자조금의 재원 확대, 제도의 확장성(지역자조금제 도입, 지자체 협력 사업 발굴, 무임승차 방지 등), 지자체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자조금 제도 개편 추진 경과 >

- 자조금단체를 **수급-내수-수출-조직성장**으로 분과*하여 **품목별 맞춤형 개선방안* 도출** 등 분과별 **전문가협의체** 운영(4개분과/’22.7~12월)
 - * 수급(마늘양파인삼), 내수(사과배포도참외), 수출(파프리카배화훼), 조직성장(복숭아키위뽕은감)
 - 조직별 운영체계, 거출방법 개선, 자조금 참여율 제고, 농산업자의 범위 설정, 품목 여건에 맞는 생산·유통자율 조절 실질적 이행, 중장기 과제 등 내실화
- 농산자조금 제도개선 연계 **법 개정 연구용역**(’23.1~7월/한국법제연구원)
 - 자조금단체 대상 의견수렴(29, 3.15, 4.11, 5.24, 6.22, ’24.1.5), 산지분야 전문가협의체 운영 및 의견수렴(1.10, 3.27), 법제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2.20, 3.30, 6.21)
- 자조금단체 대의원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농산자조금 개편 방향 설명회 개최(’23.9~10월/경기·강원, 충남·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7회, 1,250명 참석)
- 자조금단체별 중장기(’24~’28) 계획 발표회(’23.11.6~7/113명 참석)

< ‘자조금’에 대한 인식조사(’23.2.9, 17개 자조금단체/한국법제연구원 조사)>

설문조사 항목	17개 의무자조금단체		
	사적단체	공적단체	혼재
①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은	5 (29%)	10 (59%)	2 (12%)
② 자조금단체의 성격은	자조조직으로 강화 (정부개입 최소화) 14 (82%)	공적 기능 강화 (정부 개입 필요) 2 (12%)	혼재 1 (6%)
③ 자조금단체 가입은	농수산업자 의무가입 13 (77%)	가입과 탈퇴의 자유 4 (23%)	
④ 농수산업자(회원) 범위 개정	필요 13 (77%)	불필요 4 (23%)	
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성격	법인의 이사회화 14 (82%)	법인과 독립 3 (18%)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개정	필요 15 (88%)	불필요 2 (12%)	

IV

농산자조금법 제정 기본 방향

- ◇ 자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에 맞춰 **법률상의 목적·기능·운영체계** 등을 정비하고, 품목 단위 **‘생산·유통 자율 조절’** 이행 체계 뒷받침
 - 농산자조금법 제정(‘24. 下) → 하위규정 제정(‘25. 上)

1. 법적 성격 명확화

① 농산자조금과 수산자조금의 분리

- (현행) ‘농산’자조금과 ‘수산’자조금이 하나의 자조금으로 포괄되어 있어 품목별 특수성과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
- (개선) 농산과 수산의 자조금법 분법을 통해 차별적 특성 반영

☞ 농산자조금법은 신규제정, 수산자조금법은 일부개정으로 추진
 - 농업분야(전부개정, 신규제정)와 수산분야(일부개정)가 법률을 각각 개정하면서 그 중 어느 하나의 법률 부칙에서 **중전 법률을 폐지**

② 법률의 체계 개편

- 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의 관점에서 자조금단체의 시각에서의 단체 설립-조직-사업-해산의 과정으로 구성하고, 자조금단체의 발전과 육성에 중점

(현행) 법률 체계	(개편안) 법률 체계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제2장 의무자조금(제6조~제21조의2)	▶ 제2장 자조금단체(제4조~제23조)
▶ 제3장 임의자조금(제22조~제27조)	▶ 제3장 자조금의 설치 및 운용(제24조~제35조)
▶ 제4장 보칙(제28조~제33조)	▶ 제4장 보칙(제36조~제44조)
▶ 제5장 벌칙(제34조~제37조)	▶ 제5장 벌칙(제45조~제48조)
	▶ 부칙(경과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③ 의무자조금으로 자조금의 개념 단일화

- 구별된 의무자조금(제2장)과 임의자조금(제3장)의 장은 **자조금으로 일원화**
 - 회원가입이나 거출금 납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임의조항”을 삭제하고, “의무” 개념으로 **자조금의 개념 단일화**
 - 자조금단체의 설립 및 자조금 설치의 절차*의 통합

* ①발기인 : 해당 품목 농업인 등 000명/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구성, ②창립총회(위원회 구성, 의결사항, 의결정족수)→③설립인가신청→④농식품부 설립인가 및 공고→⑤설립등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자조금사업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 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1.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및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회원이 납부하는 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8. “임의농수산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농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④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

- 품목 산업진흥을 위한 개별법(김치, 전통주 등)에 자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농산자조금법**」의 **법적 영역 명확화**
-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적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함**

신 설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농산물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도개선 주요 항목

가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 정립

< 현 행 >

- ▷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농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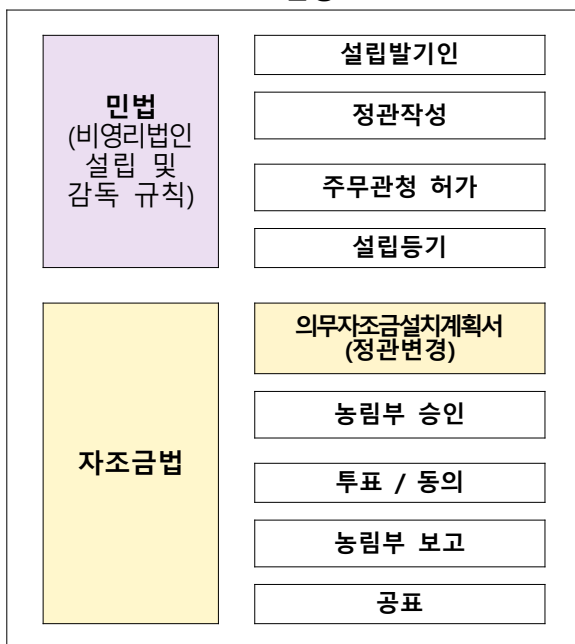
□ (개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법에 의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법적 성격을 전환하고, 단체의 법인격 규정 신설

- 해당 품목산업에 대한 대표성·책임성을 가지고, 회원으로부터 거출한 의무회비를 활용하여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활동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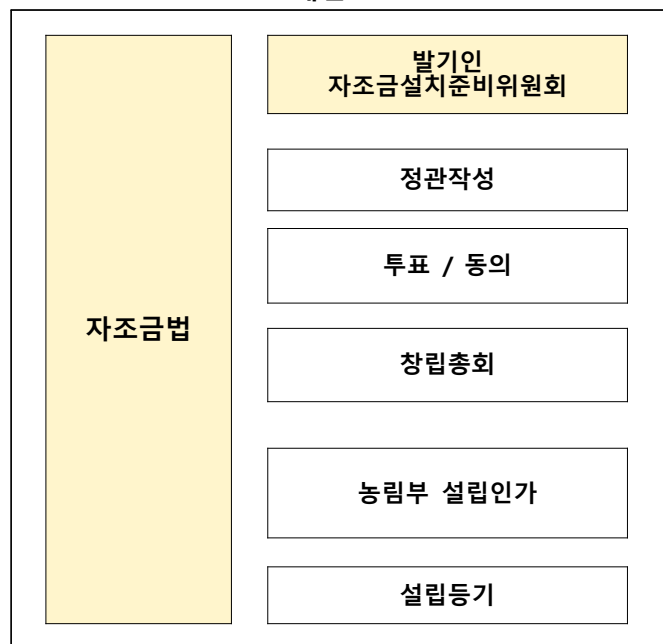
특수법인 일반적 성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법인격 부여(법률 자체에 의한 설립) ▶ 출자·출연금·보조금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 수행 ▶ 정부 위탁 업무가 아닌 고유 업무의 내용도 비영리성, 공공성, 공익적 성격
--------------------	-------------------------------------------------------------------------------------------------------------------------------------------------------------------------------------------------------

< 농산 자조금단체 설립 절차 비교 >

< 현행 >



<개선>



나 농산업자 및 회원의 범위 정비

< 현 행 >

- ▷ 대다수 품목은 **생산자중심**(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으로 회원을 두고 있고, 일부 품목*만 **생산 유통 단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여 농식품부령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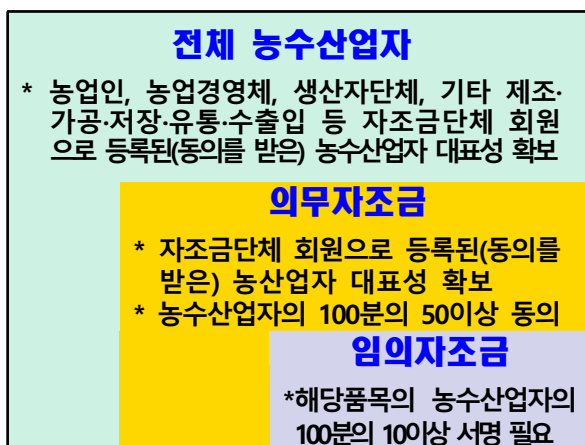
* 4개품목(인삼·파프리카·참다래·감귤), ** 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수입업자 등

□ (개선) 농산업자 및 회원의 범위 명확화로 해석의 논란 요소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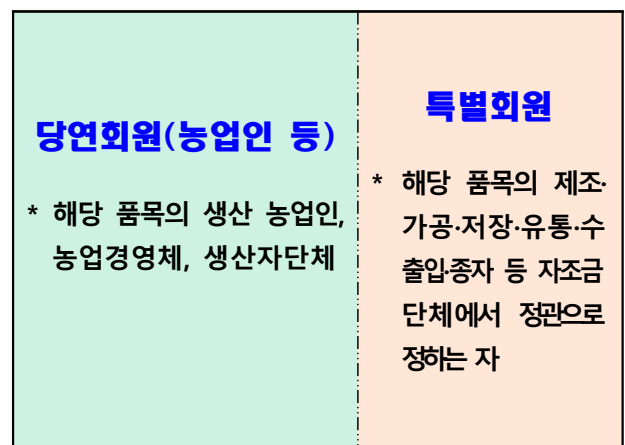
- '농산업자'의 개념을 생산자 중심인 '농업인 등'으로 개편하고, 자조금단체의 구성 회원은 ^{가칭}당연회원(농업인 등)과 ^{가칭}특별회원(가공·저장·유통·수출입업체 등)으로 구분
- 법률에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을 명확히 규정한 후, 법률에 근거한 **의무부과금**(당연회원의 거출금)과 **회비**(특별회원에 부과하는 거출금)에 대해 품목의 특성 및 **단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관***으로 정함

*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조금단체의 회비로 자조금 납부 대상은 관련 법률 또는 해당 자조금 단체의 회칙(납부기준, 납부 방법 등)에서 정함

< 현 행 >



<개선(안)>



- ▶ (당연회원) 해당 품목의 농업인·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로서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부과금**(statutory levy)을 납부하고,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 ▶ (특별회원) 품목의 특성 및 성장 단계별 **특별회원**(가공·유통·수출) 점진적 확대

다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지위 등 조직 운영 체계 정비

< 현 행 >

- ▶ 생산자협회가 자조금단체 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자조금단체의 실질적 업무를 법인격이 없는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행
 - 단체의 운영관리의 책임은 이사회가 담당해야 하나, 사업 활동의 모든 권한이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있는 구조로 민법상 법률적 지위 모호

- (개선) 자조금단체의 모체가 되는 생산자협회와의 지배구조를 분리하고, 단체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이사회 기능을 자조금관리위원회로 통합
 - 주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함으로써 단체 자율성 강화하고, 공법인 전환에 맞추어, 단체 명칭 변경(예시 한국○○연합회 → 한국○○자조회)

	현 행	개 선
구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협회들이 협력 및 논의를 거쳐 대표성 있는 '자조금 단체'를 정하여 (신규법인 설립 또는 기존 단체가 주도) 품목 자조금 구성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협회와 지배구조를 분리하고,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품목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 강화
구성 체계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의무자조금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 이사회 * 협회 행정사항 등 일부 수행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 text-align: center;"> 총회 또는 대의원회 (최고 의결기관)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60%; margin: 0 auto;">자조금관리위원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 margin: 5px auto;">사무국</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자조금단체 (특수법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 이사회(필요시) *단체별 특성 반영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 text-align: center;"> 총회 또는 대의원회 (최고 의결기관)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60%; margin: 0 auto;">자조금관리위원회 (이사회 통합)</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0%; margin: 5px auto;">사무국</div> </div> </div>

☞ 자조금단체의 대의원별(단체별 50~100명) 역할 및 직무 부여

- ① 지자체(주산지)와의 협력을 위한 지역 분과 신설로 산지 조직화 건인
 - * 지역·권역별 회원 조직(농협, 법인)간의 공동협력사업 발굴, 지자체 중심의 수급관리를 위한 주산지협의체 참여, 지자체 협업 사업 발굴 등
- ② 연구분과 운영으로 농진청 등 연구기관의 품목별 주요 연구과제에 대해 회원의 수요를 발굴, 주요 정책 대상자로서의 연구과제 협업 및 참여

라 자조금의 용도 및 사업의 범위 명확화

- 자조금단체의 **역할(사업 범위)**을 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자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자조금 용도)**을 설정
 - **(현행)** 민법에 따라 비영리 사업 수행 + 자조금법에 따라 소비촉진, 교육 및 정보 제공, 자율 수급안정 등에 자조금 사용
 - **(개선)** 자조금법에 따라 품목산업 발전 및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추진
 - * 자율적 수급안정, 소비촉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유통구조개선, 수출활성화, R&D, 정부 위탁사업 등
 - 정책적 방향은 자조금 발전 **단계별, 품목별, 시기별로 달리 부여**될 수 있으며, **반영 여부는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마 단체별 단계적 발전 체계 구축

- 각 의무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발전계획***(5년 단위)을 수립·이행,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매칭 자금 **차등(100~50%) 지원**
 - * 농산자조금 단체별 중장기 발전 1차(24~'28) 기본계획 마련('23.11월)
- 각 **단체별로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고, 단체 성장 및 농업인 호응도 제고
 - * (마늘/양파) 경작신고 활성화,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을 통한 자율 수급관리, (인삼) 수출 및 소비촉진 (배 등 과수) 소비촉진 및 소비 성향에 맞는 생산체계(품종, 품종보호권 등) 개선 등
-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적 운영**, 역량 미흡 품목 초기 정착을 위하여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관리 지원 등 통합사무국 운영**
 - 신규자조금단체 설치 지원, 경작신고 및 거출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5~'26), 단체별 회원정보(개인정보) 통합관리, 통합콜센터 운영 등 행정지원 등
 - * 단체별 거출금 부과를 위해 민간기업(BH Soft)에 개인정보 제공 및 거출금 수납업무 위탁(14개품목, 평균 3천~6천 지급), 또한 별도의 상담센터 위탁운영 중(8개품목, 단체별 연평균 2~3천만원 지급)

바 무임승차 원천 배제

- **현행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중앙정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확대**
 - * (현행) 의무거출금 미납시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식품부의 각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개정안)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
- 품목과 관련된 **모든 정책 사업은 참여자 위주의 정책지원 원칙**
 - * 농업인이 관련 정책사업 신청 시 의무거출금 납부증명서 필수 첨부
 - 신청 단계부터 가입 농가만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 한정
 - '지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 미납자 지원 배제 반영('26년 사업시행지침 등) 여부 확인(지자체 평가 항목 적용, '26~)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사 자조금 재원의 확대

- 자조금의 재원 중 하나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자조금의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활성화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제26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의 지원금 또는 기부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아

지역자조금 제도 도입

- 전국 자조금 미도입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수급조절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자조금 조성 승인
- 법률 제3조(자조금의 설치)에서 지역자조금에 대한 조성 규정을 두고,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제도화

지역 자조금 도입방안(안)

1. 대상 품목

- 의무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편중성이 높아 지역단위로 경쟁력 제고 및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
- 품목 성격에 따라 전국적 수급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품목과 지역 특화 품목으로 구분
- ① **(중점수급품목)** 전국단위 수급 관리 필요품목(채소가격안정제 품목)이면서 지역 집중도가 높고, 해당 지자체의 수급 관리 역할이 중요한 품목
* 겨울무(제주 98%), 여름배추(강원 84.3%), 겨울배추(전남 94.4%), 겨울대파(전남 67%)
- ② **(지역특화품목)** 제1 주산지의 비중이 높고, 광역 집중도가 40%이상 품목
* 당근(제주 52.4%), 브로콜리(제주 44.5%), 사금치(경남 42%), 자두(경북 82%), 유자(전남 75%) 등

2. 자조금의 기능

- 해당 품목의 경쟁력 제고* 및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되, 중점수급품목은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운영, 지역특화 품목은 해당 품목을 지역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
- * 소비촉진 홍보, 수출활성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조사 및 연구 등
- ** 생산·유통 자율조절(경작신고 체계 구축, 시장출하규격 설정, 출하조절 등), 농업인 교육 및 홍보

3. 조성기준 및 지원

- 지역단위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강화된 조건(관내 농가의 60% 이상 가입)으로 승인, 매년 사업계획은 지자체 검토를 거쳐 정부에서 승인
- 매칭 지원(농업인 조성금 대비 정부·지자체 지원금액)은 대상별 차등 적용
- 예시) 중점수급 품목은 정부 및 지자체 각각 최대 100%, 지역특화품목은 정부는 최대 20%, 지자체는 최대 100%

3. 2024년 이후 농산 자조금의 모습

구 분	2023년
단체의 법적성격	비영리법인 (자조금단체 독립성 부여)
자조금 종류	의무자조금 임의자조금
회원의범위	전체 농산업자 (품목별 생산·유통 혼재)
조직 및 운영체계	생산자협회와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간 위상 혼재
자조금 신규품목 조성기준	없음
지역자조금	미도입
지자체 지원 (재원확대)	없음
정부지원율	평균 매칭 : 70~80% (보정계수 적용 후)
무임승차 배제	정부 지원사업 지원 제한
중장기 계획수립	없음
평가환류	10억원이상 품목 (2년마다 1회, 외부기관 위탁)
통합 지원센터 주요 기능	① 신규 자조금 설치 지원 ② 운영 통합 메뉴얼 마련 ③ 콜센터 운영, 교육 홍보



2024년 법개정 이후
특수법인
원예농산물 자조금 (1품목 1단체)
당연회원(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임의회원(정관에 정한자)
① 이사회 기능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통합으로 효율적 운영 ② 대의원별 역할·직무 부여(지역분과 등)
참여 농가수 및 생산액이 크면서 국민의 식생활과 연계성이 높은 품목 (우선순위 기준 마련)
도입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된 조건으로 승인, 정부자금 일부 매칭 지원)
① 지자체 지원금 ② 지자체 위탁사업 ③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구성
100~50% (상대평가 및 차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지원 제한 확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차별 이행 관리 (단체별 핵심 추진사업 발굴, 가중치 부여)
전체 품목 (매년, 자체평가 후 전문가 평가)
① 통합거출 회원관리·사업정산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행정비용 절감 ② 품목별 중장기 계획 이행 지원 ③ 통합홍보, 상담센터운영, 교육강화 ④ 특수법인 전환 및 신규 설치 지원

◇ 법 제정 방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

- 공통 내용은 법규정으로 명시, 품목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하여, 단체의 자율성 강화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관련 연구용역('24.2~'24.11월)
- 법률 개정(안) 마련(~'24. 6월)
- 부내 의견조회 및 법령정비협의회 심사(~'24. 7월)
- (국정과제) 법제처 법제조정지원제도 심의(~'24. 8월)
-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24.11월) 및 제정 추진(~'25)

□ 단체별 중장기 계획에 따른 '25년 사업계획 수립

- 2025년 사업 및 중장기 계획 이행 평가 기준 마련(~'24. 11월)
 - * 단체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가중치 적용, 성과지표 등 세부 정책 마련
- 단체별 '25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24. 12월)

□ 지역자조금 도입관련

- 지자체 대상 지역자조금 도입관련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24. 7월)
- 지역자조금 도입관련 세부 추진계획 수립(~'24. 10월)

참고 1

농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정 법률(안)

□ 농산자조금법 제정 법률 체계 개편(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4조(자조금의 용도)
제5조(출연 및 지원)
제2장 의무자조금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0조(총회의 운영)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2조(대의원회)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19조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21조2(생산·유통 자율조절)
제3장 임의자조금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4장 보칙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제28조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자조금의 운용 평가)
제32조(지도·감독)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조금단체
제4조(법인격)
제5조(사업)
제6조(준비위원회 및 창립총회)
제7조(설립 인가)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회원)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총회)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3조(대의원회)
제14조(임원 등)
제15조(자조금운용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자조금운용계획의 작성)
제18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제19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20조(자조금의 폐지)
제21조(청산 등)
제22조(준용규정)
제23조(개선등 조치명령)
제3장 자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5조(자조금의 설치)
제26조(자조금의 재원)
제27조(자조금의 용도)
제2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29조(거출금의 납부)
제30조(거출금의 납부 면제)
제31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5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36조(공시)
제4장 보칙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제38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9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40조(자조금 운용 평가)
제4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3조(지도·감독)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